

■ 최신 판례 ■

[지적재산권]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범위

최승수 변호사 | 김태형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및 의미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인 피고인들이 구 컴퓨터프로그램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단순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법은 2009년 7월 23일 폐지되었지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개정된 저작권법 제104조의 2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위 판례에서 실시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범위와 논증과정이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

대리운전업을 하는 피해자 회사(이하 '피해 회사')는 대리운전을 희망하는 운전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대리운전기사에게 전달해 주는 배차 프로그램(I-Driver, 이하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피고인들 역시 AiCall(이하 '후속 프로그램')이라는 배차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는 기존 프로그램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면서 좀 더 빨리 대리운전 희망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기능 및 작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① 운전자가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면, ② 위 회사의 콜센터 직원이 출발지·도착지·고객의 전화번호 등 배차정보를 회사 컴퓨터에 입력하고, ③ 위와 같이 입력된 정보는 피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며, ④ 피해 회사는 위 정보를 처리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PDA화면에 오더리스트(order list)를 보내고, ⑤ 대리운전기사는 위 PDA의 오더리스트를 보면서 자신이 대리운전할 수 있는 곳을 포인트로 터치하여 배차를 하게 됩니다.

반면 후속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미리 검색조건을 설정해 두고 기존프로그램과 함께 구동시키는 방법으로 PDA의 화면을 따로 터치하지 않더라도 자동클릭으로 배차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오더리스트를 확인한 후 PDA화면을 터치해야 하는 대리운전기사보다 훨씬 먼저 배차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피해 회사는 후속 프로그램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① 기존 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면 기존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도록 하는 조치, ② PDA가 부팅될 때 자동 실행되는 기본프로그램(전화기 프로그램, 익스플로어, 파일탐색기, 메모장 등) 이외에는 기존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동시에 구동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③ 대리운전기사가 실제 PDA화면을 물리적으로 터치하였을 경우에만 기존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조치들').¹

그러자 피고인들은 후속 프로그램의 실행파일명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조치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조치들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조치들을 무력화시킨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¹ ③의 기술적 조치에 관해서, 1심에서는 피해 회사가 그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이 위 쟁점에 관해서도 가정적 판단을 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1)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술적인 진보를 포섭해 나가야 하므로 저작물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도 위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이 후속 프로그램의 동시 실행을 감지하지 못했다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항소했습니다.
- (2) 항소심 법원은 ①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9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정의함으로써 권리통제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제한적 열거주의를 취하는 저작권법의 특성상 우리 법에서 명시적으로 저작권자의 접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침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저작권자가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상의 이익보호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보호 수단은 아닌 점, ④ 기술적 보호조치는 기술적 특징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제한되는 영역, 즉 일반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영역까지도 제한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이용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절이 필요한 점, ⑤ 형사처벌 규정은 엄격하고 좁게 해석해야 하는 점, ⑥ 기술적 보호조치를 넓게 해석하면 저작권자의 권리 독점을 지나치게 강화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물에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3) 대법원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

라고 설명하고,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전제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조치들이 모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될 뿐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142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 11. 선고 2009노3689 판결](#)